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

[2025. 2. 10.]

□ 사전 체크리스트

연번	확인사항	확인방법	해당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조회	
2	신청인(사업주)이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등본 확인	
3	신청인(사업주)이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있는지 여부	등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직접 거주하는 한 가구 형태만 가능	건축물대장 확인	
5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인지 여부 *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면적만은 불가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등 확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7	관리주체 등의 동의서를 받을 것	세부안내 참고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련 법령 참고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확인	
9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10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세부안내 참고	
11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세부안내 참고	
12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세부안내 참고	
13	내국인 숙박 금지,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는 불법행위는 금지됨을 숙지하였는지 여부	행정처분,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숙지	
14	소음, 소란, 매연,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숙지하였는지 여부	이웃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용객에게 고지, 민원 발생 등에 유의하여 운영 철저 요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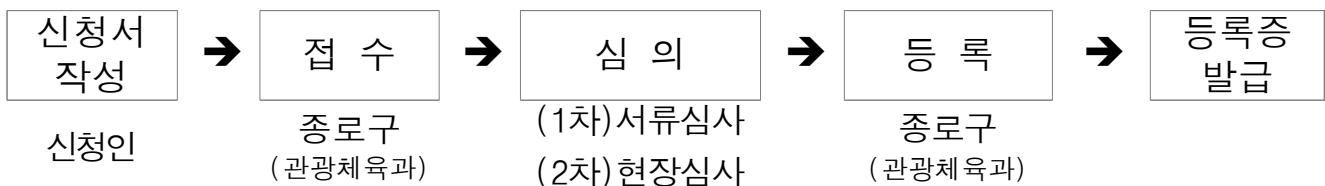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신청시기 : 영업 개시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 처리절차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 하단 첨부

② 사업계획서 ※ 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개요 : 등록신청서 기재내용 포함, 거주인원 등
- 시설개요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계획,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 :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③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일 현재 신청하려는 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본인 소유 건축물 등록 시)
- 임대차 계약서(타인 명의 건축물로 등록 시)
-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동의한다” 하는 소유자의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경우 제출 불요

⑤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⑥ 한글 및 영문 비상대피도 각 1부

- 제출용은 A4 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제출
- 사업장 게시용은 B4 용지 크기로 출력하여 객실 내 게시

⑦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동의서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타 입주세대가 있는 경우 필수
- 10세대(가구) 미만 시 전체 세대(가구) 동의 필요

□ 접수방법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
- 서류 등 사전검토 : 관광체육과 (종로구 새문안로41, 10층 관광사업팀)
- 접 수 처 : 민원접수창구(유기한민원) (종로구 새문안로41, 1층)
※ 반드시 관광체육과에서 서류 사전검토 받은 후, 민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비용 : 신청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
- 문 의 처 :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관광사업팀(☎02-2148-1862)

□ 등록기준 세부안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

- 등록신청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사이트에서 해당주택 주소지를 검색하여 ‘도시지역’으로 나오는지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불허업종에 해당될 수 있음

② 신청인(사업주)이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 ‘주민’ 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법인 명의로 신청불가
-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어야 함.

③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등록신청하려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건축물 용도’ 확인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등록 불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원룸형 주택 등록 불가**
- 여러 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한 **대규모 숙박업 불가**
- 신청인(사업주)가 실제 거주하는 한 가구 형태의 주택만 가능
- 신청인(사업주)가 거주.생활하는 방 외에 객실로 사용할 방 1개 이상이어야 함
- 건축물대장(평면도) 상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소유주) 동의 필요

⑤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일 것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외
- 공동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외

⑥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신청인(영업주) 본인 소유의 주택 : 신청일 기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여야 함.
- 신청인(영업주)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어야 함.
※ 전대차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전대차동의서 필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 불가
- 민간임대주택은 세금 등 관련기관 사전 확인 필수

⑦ 관리주체 등의 동의서

-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일 경우 : 인접세대 동의서 필요
. (10가구·세대 미만) 전체 가구·세대 동의서 필요
. (10가구·세대 이상) 신청주택 기준 양옆·직상·직하 가구(세대)를 반드시 포함하

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1/2) 입주민 동의 필요

※ 통로식인 경우 해당 통로에, 복도식인 경우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1/2) 동의 필요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 인접세대 동의서와 별개로 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하며, 회의록·의결서 제출
-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⑧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
.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30년
. 그 외 구조 : 20년
- 신청하려는 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확인
- 심사 기준(종로구)

주구조	사용승인일 (기준: 등록신청 연도)			
	25년 이하	26년~35년 이하	36년~50년 이하	51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등록가능	등록가능	건축물 안전 점검서 첨부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서 첨부
반지하·지하층	등록불가			
그 외 구조 (연와조 등)	등록가능	건축물 안전점검서 첨부	건축물 안전 점검서 첨부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서 첨부

※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미기재된 건축물 및 미답이문 구조 등록 불가

※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주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인

⑨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없을 것

- 신청하려는 주택의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하려는 주택의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 현장심사 시 평면도와 주택의 구조가 일치하여야 함

⑩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구비

- 관련법령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드시 설치
- 소화기 1대 이상(3.3kg 이상, 야광 표지판 부착)
-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 손전등(야광 표지판 부착), 단독형 화재경보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보일러실 포함), 피난안내도(국문·영문)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3층 이상 시 완강기 설치 권고(지지대, 표지판 설치 포함)
- 출입문 상단 유도표지판, 유도등 부착(야광)
- **보일러실** : 가스누설경보기, 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 **주방(가스 사용 시)** :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 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소화기(3.3kg 이상) 1개 구비

※ 현장점검 후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⑪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므로, 외국어 응대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인(또는 가족,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및 안내 가능할 수 있는지 사전 확인

⑫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화장실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객실 정돈 및 청소 상태, 손님용 침구류 등 청결 상태 확인
- 기타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 구비

⑬ 내국인 숙박 금지,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는 불법행위 금지

-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⑭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

-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
-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 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받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여행업만 해당)	전자우편주소(여행업만 해당)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심의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등록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등록증 발급
---------------	---	-----------------------------------	---	-----------------------------------	---	-----------------------------------	---	--------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 번	행정정보명	연 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위임장

☐ 위임 받으시는 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위임 하시는 분

-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위임 내용 :

☐ 위임 일자 : 2025 . . .

종로구청장 귀중